

추천 제목 : 미국총회 설립

기존 ¶¶ 506 과 507 사이에 새 단락을 추가하고 후속 단락의 번호를 다시 매긴다

따라서:

새 ¶1. 입법 기능을 하는 미국의 연회를 대표하는 총회대의원들 모두로 구성된 미국지역위원회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각 해외지역총회 혹은 지도자 기관에서 평신도 목회자 한명씩 선출되어야하고, 이들은 발원권과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 위원회는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운영, 관리와 사역에 적용되는 모든 안건들과 ¶ 101 과 ¶ 543.7(이하 미국 지역-적용 가능한으로 표시)에 따라서 해외지역총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안건들 다룬다. 미국지역위원회는 총회가 재정한 조항과 총회가 이 위원회의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총회의 조직 방안 및 의사 진행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2. 미국지역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미국총회가 설립되고 기능을 할 때까지 유효하며, 이후의 위원회와 규정들은 만료된다.

3. 미국지역위원회는 총회 개회 직전에 소집되고, 위원회에 배정된 입법안을 다룬다.

4. 미국지역위원회의 법안은 위원회의 입법 절차에 따라서 총회의 투표를 위해 총회에 보고된다.

미국 지역위원회 – 입법 가능 (비공개 입법안)

입법 기능을 가진 총회의 위원회로서 미국지역위원회(“위원회”)는 미국 지역, 즉 미국에 관련되고 적용 가능한 청원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미국의 교회와 관련된 안건들과 미국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청원서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해외지역총회 대의원들의 영역에서 벗어난 미국의 법적, 상황적, 그리고 재정적 안건들을 다루어야하는 전체 총회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이 위원회는 임시기구로서, 미국총회가 설립되고 역할을 할 때까지 계속 기능을 한다. 위원회는 다음 조항들에 따라 운영된다:

1. 총감독위원회가 임명한 감독은 이 위원회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임원 선출은 총회의 조직 방안 및 의사 진행 규칙 속의 입법위원회 임원 선출 절차를 따라야한다.
2. 총회준비위원회는 이 위원회에 할당된 청원서의 수와 성격에 기초해,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의 수를 정해야 한다.
3. 위원회의 전반적인 입장에 반대하는 표가 50 이하인 입법 항목은 총회에서 미국에 관련된 사안으로 의사일정표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 의사일정표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총회 회의법에 따라 필요한 숫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4. 총회준비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표 달성과 위원회의 기능에 필요한 기타 규칙, 책임 및 제한 사항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5. 장정 안에, 이 청안 안에, 혹은 총회의 다른 결의사항 안에, 혹은 총회의 조직 방안 및 의사 진행 규칙 안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위원회의 절차는 총회입법위원회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
6. 미국 지역과 관련된 청원(조정 가능한 사항들)은 재정적 영향이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청원에 사용되는 부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총회의 공식 회의록에 부호화되어야 한다.

2 부 - 조직

1 절 의회들

[새로운 ¶ 11. 제 IV 조를 추가하고 뒤따르는 단락과 항의 번호를 다시 매긴다]

¶ 11.4 항 - 미국의 교회를 위한 미국총회가 있으며, 그에 따른 권한, 의무, 특권 및 제한은 다음과 같다.

2 절 총회

[¶ 16.4 에서 삭제]

¶ 16.4. 미국 밖에 있는 본 교회의 사역을 조직하며, 개발하며 관리하는 일.

[6 절에 새로운 ¶¶ 32-35 을 삽입하고 뒤따르는 절와 단락의 번호를 다시 매긴다]

6 절 미국총회

¶ 32. 1 조. –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무, 권한, 특권 및 제한 사항을 가진 미국총회가 미국 교회의 사역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처음에 미국총회는 7 절 ¶ 37 에 정의된 지역총회들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그 후, 총회는 지역총회의 수와 경계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

¶ 33. 2 조 – 미국지역총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수만큼의 총회대의원 대표들로 구성된다. 총회대의원의 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아야 한다.

[신규 ¶ 551]

¶ 35. 4 조. – 미국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1. 총회의 권한 하에서 그리고 지역총회의 상황적 요구에 따라 장정의 변경과 번안을 포함해서 미국총회의 경계 안에서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든다.
2. 장정의 미국총회에 관한 변경 혹은 개정되거나 혹은 새로운 부분 그리고 규칙과 규정에 대해 생겨난 법적 문제를 결정하도록 사법위원회를 임명한다.
3. ¶¶ 23-27 에 지역총회에 부여된 의무에 대해 미국총회가 권한이 없을 경우, 총회가 부여한 다른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기존 ¶ 39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39. 3 조. – 지역총회의 수, 명칭 및 경계의 변경은 관련된 각 지역총회 속에 연회의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총회 미국총회가 변경할 수 있다.

제 6 절. 4 장 – 연회

[제 5 절 미국총회와 ¶ 550 – 555 를 추가하고; 뒤따르는 절의 번호를 다시 매긴다.]

5 절. 미국총회

¶ 550. 승인 – 모든 지역총회들의 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총회가 있어야 하며, 미국 외의 영토를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총회라고한다.

¶ 551. 구성 — 미국총회는 총회 직전에 미국의 지역총회에 속한 연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모든 총회대의원들로 구성되고, 동일한 연회들을 대표한다. 미국의 지역총회에서 예비 총회대의원으로 선출된 예비 총회대의원들 역시 예비 미국총회 대의원으로 봉사한다. 게다가 각 해외지역총회나 지도자 기구에서 선출된 평신도와 목회자 한 명씩은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 552. 조직 — 1. 미국총회는 이전 지역총회에서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총회가 끝난 후 1 년 이내에 개최된다. 최초 미국총회의 날짜와 장소는 총회가 정한 방식으로 정한다.

2. 미국총회는 결정된대로 휴회를 선언할 권리가있다. 미국총회의 회기는 지역총회의 감독들이 주재한다. 감독은 자신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총회의 추가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3. 미국총회의 의장은 미국총회의에 대한 항소와 관련된 회의절차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사법위원회에 대한 항소와 관련된 법의 문제를 결정하지만, 미국총회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4. 미국총회는 하나 이상의 실행위원회, 실행이사회 또는 협력협의회를 조직하고 설립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의 위원회는 그 재산과 법적 이익을 대표할 목적으로 미국총회에서 주어진 권한과 회원을 가지고 미국지역총회의 회기 사이에 발생하는 필요한 업무나 미국총회에 의해 설립된 위의 위원회와 이사회에 할당된 업무를 다룬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총회의 의무와 권한을 수정이나 대체할 수 없다.

¶ 553. 권력과 의무 — 1. 미국총회는 연회, 선교연회 및 지역총회의 선교, 교육, 복음, 산업, 출판, 의료 및 기타 연대적 관심사와 총회와 위에 언급된 기관에 관련된 다른 업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미국총회는 그러한 업무를 위해 적절한 기관을 만들고 필요한 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2. 연합감리교회의 헌장과 총칙을 반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며 그리고 개교회와 교단 사이의 연대적 관계의 정신을 유지한다면, 미국총회는 총회가 수정불가라고 지정한 부분과, 특별히 교회, 지방회, 연회, 그리고 지역총회의 사역을 위한 기관과 행정에 관련해서 교회의 특별한 조건과 사명이라고 지정한 장정의 부분을 제외하고 장정을 개정하고 번안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을 조건으로, 지역총회나 연회의 요청에 따라 미국총회는 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총회나 연회에게 이 조항에 관련된 하나 이상의 개정이나 번안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미국총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연회, 지방회, 구역회에 관련된 절차를 변경하고 번안할 권한을 가지며, 미국총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연회의 보충 질문에 관한 업무 추가 할 수 있다.

4. 미국총회는 그 경계 내에서 지역총회들, 연회들, 그리고 선교연회들의 회의록을 조사하고 인준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것을 권고할 권한을 가진다.

5. 미국총회는 교단 전체와 관련이 있는 일반 장정(¶101 – 해외지역총회가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장정의 부분) 중 교회의 헌장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고 총회가 준 권한 하에 미국총회가 제정한 수정된, 개정된 혹은 새로운 부분 역시 포함되는 지역총회 장정을 편집하고 출판할 권한을 가져야한다.

¶ 554. 기록 및 역사자료보관소 — 1. 의회장과 총무가 정식으로 서명한 미국총회의 회의록은 총회의 검토를 위해 보내져야 한다. 두개의 종이 사본은 교회역사보존위원회와 재무행정협의회에 무료로 보내며, 디지털 사본 한 부가 종이 사본과 함께 발송되어야 한다.

2. 미국총회는 일반 장정(¶101)의 번안본 또는 지역총회에서 사용되는 그 일부에 대한 사본을 교회역사보존위원회와 재무행정협의회 제출해야 한다.

¶ 555. 미국총회기관 — 1. 미국총회는 사법부를 설립해야한다. 이 사법부는 미국총회에 배정된 임무 이외에 장정의 개정된 부분에 의해서 미국총회가 취한 결정에 합법성을 듣고

판단한다. 또한 미국총회 회원의 5분의 1 혹은 주재하는 감독에 의해 항소된 장정의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총회의 주재 감독에 의한 법적 결정에 합법성을 듣고 판단한다. 게다가 사법부는 미국총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연회의 5분의 1 혹은 연회의 주재 감독의 항소로 장정의 개정된 부분과 관련된 연회의 주재 감독에 의한 법적 결정 혹은 장정의 개정된 부분 아래에서 이루어진 연회의 조치에 대한 합법성을 듣고 결정해야한다.

2. 미국총회는 미국 안에 교회의 사역에 중요하다고 결정된 다른 기관 또는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미국총회의 조직하기 위해서 장정에 규정되지 않은 청원

허가: 미국의 5 개 지역총회로 구성되는 새로운 미국지역(USRC)의 설립과 기능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4 년 임기의 임시창립위원회(ICO)가 있어야 한다.

구성: 총감독위원회는 지도자분별위원회를 통해 20-25 명의 임시창립위원회(ICO) 회원을 임명한다. 임시창립위원회의 회원은 인종 및 성별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내 지역총회에서 3 명을 선택하되 미국내 지역총회의 비례대표제에 따라 결정된다. 임시창립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미국총회 안의 연회에서 선출된 투표권을 가진 총회대의원들 중에서 선출된다. 회의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은 총회행정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임시창립위원회에 대한 조언과 협의를 위해 해외지역총회 혹은 지도자 기관에서 선출된 두명이 선출되어야한다.

책임: 임시창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임시창립위원회는 미국총회의 최초 모임을 소집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2. 임시창립위원회는 미국총회의 첫 모임을 계획 할 때 총회 총무와 총회 사무장과 협력해야한다.

3. 임시창립위원회는 총회준비위원회의 해당위원회와 협의 하에 미국총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무슨 위원회와 임원들이 필요한지를 첫 회의에서 미국총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4. 미주지역총회의 첫 회의가 완료되면, 총회의 위원회로서 임시창립위원회는 미주지역총회가 특정 시간과 목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계속할 것을 승인하지 않는 한, 소멸된다.

이 청원은 새로이 ¶¶ 11, 32-35 및 550-555 에서 제안된 미국총회의 설립에 대한 총회 승인이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상되는 재정적 요구사항 – 미국총회

미국총회의 설립은 회의 날짜를 줄임으로써 총회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총회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총회에는 교단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총회는 총회가 끝날때 소집될 수 있고, 또는 지역총회와 함께 소집 될 수 있으며, 미국의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짧은 모임을 가질 것이다.

미국총회의 임시창립위원회는 사년 동안 2박 3일의 회의를 총 두번 가질 것이다. 임시창립위원회는 미국 중부 지역에서 만날 수 있으며 교회 나 총회기관으로부터 모임 공간을 기부받을 수도 있다. 최대 25 명의 비행, 식사, 숙박, 직원 및 장소 비용을 포함해서 최대 25 명이 두번을 만나면, 임시창립위원회는 \$ 83,000 에서 \$ 98,000 사이의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다. 임시창립위원회는 한번의 4년 회기 동안만 만나기 때문에, 2021-2024년 회기에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는 필요치 않다.